

한국 비관세장벽 이슈

Korea Non Tariff Barriers Issue

한국, 수출 식품 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정예규 행정 예고



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, 국내식품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 규정 및 안내

2024년 10월 24일, 식품의약품안전처는 **국내 식품 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수출위생요건 체결, 수출업소 등록,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**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출지원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. **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제출 가능함**

1. 대상 :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, 용기·포장, 건강기능식품, 축산물(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 38조 1항에 따른 '수출 식품 등'의 정의)

2. 주요 내용(상세 내용은 [원문](#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

구분	주요 내용
제 3조 (수입허용요청)	① 수출식품 등의 수출을 위하여 수출상대국 정부에 수입허용 요청 가능 ② 수출상대국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국내 법령과 규정, 위생관리제도, 시험·검사기관, 수출업소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 가능
제 4조 (현지실사 지원)	①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현지실사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협의, 자료 제공, 현장참여, 통역 및 교통편 지원 등에 협조할 수 있음 ②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현지실사 후 결과 개선을 요청한 경우 수출업소등, 시험·검사기관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수출상대국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
제 5조 (수출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 협의)	① 수출상대국 정부가 국내 수출식품등의 수입허용을 결정하고 해당 수출식품등에 대한 수출 위생요건과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및 수출상대국의 법령과 규정,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출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 내용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

구분	주요 내용
	② 국제기준의 변경, 국내 또는 수출상대국의 법령과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출위생요건, 수출위생증명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출상대국과 협의하여 개정 가능
제 6조 (수출업소등 등록지원)	① 수출업소로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와 수출위생요건에서 정하는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②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수출업소등의 등록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40일 이내에 수출업소등으로 등록을 추천함 ③ 등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출업소등에 대한 등록 절차를 종료하거나 보완을 요청하여 적절한 지원 제공(3개월 내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 후 보완 결과 제출 요청 가능) ④ 수출상대국에 수출업소 등록 요청, 등록이 완료된 후 관계 기관의 장과 신청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보해야 함
제7조 (수출업소등 정보 변경 및 취소)	① 별지 제1호의 변경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②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류 처리 진행, 등록 정보 변경 및 등록 취소 결과 통보
제8조 (수출식품등의 수출위생증명서 신청 및 발급)	① 수출업소등의 영업자는 수출위생요건에 따라 수출식품등의 생산 작업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수출검사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수출식품등에 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적절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를 발급
제 9조 (봉인)	①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요구하거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식품등을 적재한 컨테이너 등에 대해 봉인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의 봉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기록·관리해야 함 ② 수출식품등에 봉인을 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 봉인 식별번호를 기재하여 발급

-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업소등 등록 유지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, 수출상대국 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한 지원, 국내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자문을 제공해야 함
-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**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**

출처

식품의약품안전처, 「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」 제정예규 행정예고, 2024.10.24